

[별표 1]

###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이상
1. 자료실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경고	1개월 이용제한	3개월 이상 이용제한
2. 자료실내로 음료 및 기타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반입 가능(자료실내 섭취 금지)			
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훼손하거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음주·소란·악취, 고성·폭언·욕설, 정치·종교·상업 관련 활동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5.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6. 타인(가족포함)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			
7. 자료실내에서 게임·음란·주식·사행성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8. 감염병 등 재난, 비상 상황 시 정부 및 도서관 이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9. 도서관 규정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0. 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1년 이상 이용제한	3년 이상 이용제한	10년 이상 이용제한
11. 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 또는 행동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12. 절도·폭력·무단침입·기물파괴·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13. 기타 공중도덕 위반한 경우	경고	1개월 이용제한	3개월 이상 이용제한

\* 다수의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 부적격자라고 신고하거나 도서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경고 절차 없이 즉시 퇴관 및 당일 도서관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당일 위반행위 중복 발생 시, 무거운 기준으로 조치한다.